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4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김교흥

조인철 · 송옥주 · 박희승

서영교 • 문진석 • 위성락

이병진 · 김현정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 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 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관리

- 제68조의13(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① 국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급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자문에 응한다.
 - 1.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체계 관리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지원·촉진 등에 관한 사항
 - 3.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긴급 생산 · 수입 명령에 관한 사항

- 6.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개선조치 및 비축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 항
- ③ 공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공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워
- 2. 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4.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5. 의약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공급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급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급관리위원회의 의

결을 갈음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공급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4(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제외한다) 중 수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 품
 - 2.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는 일반의약품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5(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중에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해당 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지정된 사실과 관리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서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6(긴급 생산·수입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 생 산·수입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자
 -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생산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생산원료 또는 수입물량이 부족하여 국가간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등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지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명령의 절차와 방법, 명령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7(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개선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약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판매조 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자
- 2.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 3.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유통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절차, 판매조건 등의 기준, 개선조치의 범위 및 조치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8(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관리와 제68조의17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도매상·판매자 등에게 생산량, 출고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수 있는 정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 1. 정보시스템
- 2. 제83조의6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제공 요청, 유지·관리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에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4. 제68조의16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10의5. 제68조의17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6 및 제6 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적용 제외) 「약사법」 제68조의14에 따라 수급 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장의2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u> 공급관리</u>
<u><신 설></u>	제68조의13(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① 국민의 건
	강한 삶과 관련된 특정 의약품
	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
	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
	급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급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자
	문에 응한다.
	1.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체계 관리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지원·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에 관

한 사항

- 6.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개선조치 및 비축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의 공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기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나 자문 을 요청하는 사항
- ③ 공급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공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식 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 2. 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의약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급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급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급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공급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4(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국가 필수의약품을 제외한다) 중 수 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 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 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하 여 관리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치

 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 2.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의사 또는 치과의 사가 처방하는 일반의약품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상황이 종료되 었거나 종료가 명백하게 예상 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 다.

<신 _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15(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급 불안정의약품 중에서 신속한 공급이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를 고시하고, 해당 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지정된 사실과 관리계획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긴급 생산 ·수입 의약품으로서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의 심

<신 설>

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6(긴급 생산・수입 명 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 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 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8조 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을 생산하거 나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자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자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생산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의 생산원료 또는 수입물량이 부족하여 국 가간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등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지속해야 할 사유 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

<신 설>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명령의 절차와 방법, 명령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7(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개선조치)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약품의 판매적, 판매절차, 판매량, 판매조건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한다.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약국개설자
- 2.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 3.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 료기관 개설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유통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기 획재정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절차, 판매조건 등의 기준, 개선조치의 범위 및 조치 해제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18(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관리와 제68조 의17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 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 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제조업 자 • 수입업자 • 도매상 • 판매자 등에게 생산량, 출고량, 판매이 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 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 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량,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의3. (생 략)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 한다.

- 1. 정보시스템
- 2. 제83조의6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시스템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 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 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 제공 요청, 유지·관리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95조(벌칙) ①	
	.

1. ~ 10의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0의4. 제68조의16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
	<u> </u>
<u> <신 설></u>	10의5. 제68조의17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